

NAJU  
*Web  
Contents*

2022년 05월 20일 14시 04분

# 목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목차                         | 2 |
| 관내신규채용보조금지원                | 3 |
| 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     | 3 |
| 지원내용 : 신규채용창출 인원 인건비 일부 지원 | 3 |
| 신청(지원)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 방법      | 3 |
| 보조금 지급방법                   | 3 |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관내신규채용보조금지원(선택됨) | 중소기업육성자금추천 및 이차보전지원 | 국내.외 전시(박람회) 참가 중소기업지원 |
| 나주시 스타기업육성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지원대상

| 구분    | 요건(모두충족)   |
|-------|--|
| 기업    | 신청일 현재 나주시 관내에서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신규 종업원을 채용한 기업   |
| 신규고용인 |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, 고용주와 신규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 보험에 가입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</li> <li>▪ 지원기간 중 중도퇴사 하지 않을 인원으로 신중히 선정</li> </ul> |

## 지원내용 : 신규채용창출 인원 인건비 일부 지원

- 지원인원 : 기업 당 3명 이내
- 지원금액 : 연간 1인당 3,600천원 (월300천원) ※ 분기별 지급(3개월 단위)
- 지급조건 : 매월 상시고용인원 이상 유지

## 신청(지원)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 방법

- 규제용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+신규채용인원(보조금 대상인원)
- 예시) 10 ~ 12월 평균 근로자수 10명, 신규채용인원(보조금 대상인원) 2명 인 경우→상시고용유지인원 12명(지원 받는 기간 동안 유지)

## 보조금 지급방법

- 3개월 단위로 보조금 대상자의 고용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
- 제출서류 : 보조금 청구서,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3개월분), 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(3개월분), 월별임금대장(3개월분)

문의처 :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(☎ 339-8293)



NAJU

# ***Web Contents***

